별첨 양식 1

의료보호 입원자 퇴원 지원 위원회 개최의 안내

　　　　　　　　귀하

　　　　년　　월　　일

1. 본인의 의료보호 입원 기간이 　　　　년　　월　　일까지이므로,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항 제2호에 입각해, 의료보호 입원자 퇴원 지원 위원회(이하 「위원회」라고 함.)를 　　　　년　　월　　일에 　　　　　　　　에서 개최합니다.

2. 위원회에서는

① 입원 기간 갱신의 필요성 유무 및 그 이유

② 입원 기간 갱신이 필요한 경우, 갱신 후 입원 기간 및 해당 기간에 퇴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실시합니다.

1. 위원회에는 주치의, 간호 직원, 퇴원 후 생활환경 상담원 외 본인의 진료에 관련된 분이 출석하며, 본인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. 출석을 희망할 경우는 본인을 담당하는 퇴원 후 생활환경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 또, 본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알려드립니다.
2. 또한 본인의 가족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있을 경우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, 본인이 퇴원 후 생활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는 지역 원조사업자 및 입원 전에 통원했던 진료소 직원 등 본인의 지역 생활에 관련된 분께 위원회에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, 위원회의 출석 요청을 바라는 경우는 퇴원 후 생활환경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 단, 요청하더라도 여건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 경우 출석하지 못한 분께는 심의 후에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3. 궁금한 사항 등이 있으면, 본인을 담당하는 퇴원 후 생활환경 상담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.

병원명

관리자 성명

퇴원 후 생활환경 상담원 성명